의안번호		제2745호	
의	결	2024.	
연 원	일 일	(제	회)

۵۱	
의	
결	
사	
사 항	

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향숙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. 1. 5.

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(김향숙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45 발의연월일: 2024. 1. 5.

발 의 자:김향숙,김석한,우정욱,

김원순, 최두임, 허옥희,

이정숙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1 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라. 보호구역의 공표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,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등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5호

- 예고기간: 2024. 1. 5.(금) ~ 2024. 1. 10.(수) [5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와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,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경찰서,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,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 여야 한다.
- 제4조(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)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"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"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.
 - 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
 - 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

- 3.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
- 4.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
- 5.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미터 내에 3건 이상(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)인 시설 및 장소제5조(보호구역의 공표) 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, 위치 및 범위, 교통안전시설물, 도로부속물 등을 고성군 누리집(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), 읍면 게시판,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도로교통법

- 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,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 - 2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 - 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.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<u>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</u> 는 장소
 -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 -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 -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
- 제12조의3(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등) ① 경찰청장은 제1 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·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 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・운영, 정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- □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2. "노인복지시설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.
 - 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 - 나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
 - 다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 - 라. 「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
 - 마.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 - 3. "장애인복지시설"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.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전통시장"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·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 · 군수 · 구청장"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.

가.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 집한 곳일 것

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□ 의료법

- 제3조(의료기관) ①이 법에서 "의료기관"이란 의료인이 공중(公衆)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·조산의 업(이하 "의료업"이라 한다)을 하 는 곳을 말한다.
 -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- 1. 의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.

- 가. 의원
- 나. 치과의원
- 다. 한의워
- 2. 조산원: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·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- 3. 병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병원
 - 나. 치과병원
 - 다 하방병원
 - 라. 요양병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 - 마. 정신병원
 - 바. 종합병원

□ 약사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"약국"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[약 국제제(藥局製劑)를 포함한다]를 하는 장소(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 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)를 말한 다. 다만,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.

□ 노인복지법

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노인주거복지시설
- 2. 노인의료복지시설
- 3. 노인여가복지시설
- 4. 재가노인복지시설
- 5. 노인보호전문기관
- 6.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
- 7.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□ 자연공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자연공원"이란 국립공원·도립공원·군립공원(郡立公園) 및 지질 공원을 말한다.

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"도시공원"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·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, 제19조, 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20조,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, 제39조, 제40조, 제42조, 제46조, 제48조의2,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(이하 "도시자연공원구역"이라 한다)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